

| 국무조용설 **보도자료** (배포) 2018. 7. 18(수)

				_					
즉시 사용									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고용노동부						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					
	직장 괴롭힘 근절	국무:	조정실 정부	업무평가실	과장 윤수현, 사무관 박정현 (044-200-2465, 2480)				
		고용!	ェ동부 근로:	기준정책과	과장 최태호, 사무관 박원아 (044-202-7526, 7544)				
	강제집행 제도개선	국무조	정실 일반행	성정책관실	팀장 성현국, 서기관 김수철 (044-200-2089, 2090)				
		밭	무부 법무신	의관실	국장 이진수, 사무관 김도연 (02-2110-3501, 3506)				

또 다른 생활적폐.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뿌리 뽑겠습니다.

<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>

- ▶ '공공분야 갑질 근절(7.5)'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 추진
- ▶ 인지·신고-조시-기해자처벌-피해자보호-사용자책임-예방교육 등 6단계 21개 괴제

<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>

- ▶법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강제집행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 실시
- 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8일(수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**제46회**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세종↔서울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 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**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**」을 심의· 확정하고, 「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 - * 참석 : 교육부·과기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 국토부・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공정위・권익위 위원장, 기재부・외교부 차관, 인사처장. 금융위 부위원장. 통계청 · 특허청장

◆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(국조실)

- □ 정부는 최근 발표된 「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(7.5, '현안조정회의')」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- □ 이번 대책은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, 피해자 지원,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로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 (인지·신고)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**직장 괴롭힘 개념** 규정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**직장 내부 신고절차**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, 정부내 신고창구를 일원화* 하겠습니다.
 - * 범정부 갑질신고센터(권익위, www.epeople.go.kr 내에 8월 중 구축예정)
 - ② (조사)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하고, 관련 법령 위반시 국가기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 - * 직권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·과태료 부과
 - ③ (가해자 처벌)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,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 시에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 - ④ (피해자 보호) 직장 괴롭힘 피해자·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,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,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⑤ (사용자 책임) 직장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, 위반시 처벌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.
 - ⑥ (예방·교육)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,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□ 아울러, 의료·교육·예술·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공통대책이외에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□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**관련 법령***을 정비하고, **단계별 개선과제**를 신속히 이행하여 **직장 괴롭힘 근절대책**을 **강력히 추진**해 나가겠습니다.
 - *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 개정

◇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 (법무부)

- □ 한편, 이날 회의에서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,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 등 최근 상가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에서 나타난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.
 - 이날 토론은 법치사회의 핵심가치인 **법의 집행력 확보와 인권보호**를 **조화** 시킬 수 있는 **방안을 모색**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 - 이번 토론은 강제집행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정부가 토론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.
 - □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의 집행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 입법 논의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붙임)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세부과제

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 세부과제

단계 (분야)	과 제 명	소 관	추진일정
인지· 신고	① 직장 괴롭힘 개념규정 도입	고용부·문화부 등	′18.10~
	② 직장 괴롭힘 신고 당사자 확대	고용부·문화부 등	′18.10~
	③ 직장 괴롭힘 신고절차 마련	고용부	′18.10~
	④ 국가기관에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설치	권익위 등	'18.12
조사	①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	고용부 등	′18.10~
	② 국가기관 직권조사	고용부·교육부·문화부	′18.7~
	③ 국가기관의 건강진단 명령	고 용 부	′18.7~
가해자 처벌	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	고용부·복지부 등	′18.10~
	②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	법무부·경찰청 등	계 속
피해자 보호	① 피해자·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	고용부·문화부 등	′18.10~
	② 피해자 심리상담·의료비 등 지원	고용부	′18.7~
	③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	고용부	′18.12
	④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	법무부·고용부 등	′18.7~
사 용 자 책임	① 사용자 등의 안전·보건조치 의무 확대	고용부	′18.12
	② 사용자 조치의무	고용부·문화부 등	′18.10~
	③ 사용자 처벌 신설	고용부	′18.12
	④ 특별근로감독 실시	고용부	′18.8
예방· 교육	① 자율적 예방 인프라 구축	고용부	′18.7~
	②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	고용부	′18.12
	③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노력	고용부 등	′18.12
	④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 노력	고용부 등	'18.7

단계 (분야)	과 제 명	소 관	추진일정
분야별 추가 대책	<의료분야>		
	① 의사협회·간호협회 신고상담센터 운영	복 지 부	계속
	② 면허정지 근거법률 마련 인권침해 대응체계 평가반영	복 지 부	′19~
	③ 직무스트레스 상담, 치유프로그램 제공	복 지 부	′19~
	④ 의료인 양성·보수교육 강화	복 지 부	'18.12
	<교육분야>		
	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	교육부	계 속
	② 국가연구개발 지원 중지 등 제재	과기부·교육부	'18.12
	③ 대학 내 인권센터를 통한 상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치유	교육부	계속
	④ 대학원생 조교 복무가이드라인 및 표준 복무협약서 개발, 학생권리장전 확대	교육부	′18.12
	⑤ 중고등 학교 직장괴롭힘 방지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정	교육부	′18.10~
	<문화·예술·체육분야>		
	① 문화예술, 체육분야 신고창구 확대	문 화 부	'19.1~
	② 문화예술분야 기금지원사업 배제 체육 지도자 자격취소	문 화 부	′18.7~
	③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명단공표 근거마련	문 화 부	'19.1
	④ 문화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운동선수 의료비 지원	문 화 부	′19.1~
	⑤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	문 화 부	'18.12